

의안번호	제 229 호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조성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3월 6일
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조성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3월 6일
발 의 자 : 조성태, 이상정, 김정일,
박봉순, 안지윤, 안치영,
이정범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민의 출산·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,
- 인용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신설함. (안 제9조)
- 인구문제 관련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, 토론회, 자문회의 등 개최 및 홍보·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함. (안 제10, 11조)
-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증원 (안 제14조)
 - (현행) 20명 이내 → (개정) 25명 이내
- 인용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함. (안 제20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3 - 21호
- 다. 협의 : 인구정책담당관
- 라. 비용추계 : 첨부제외 사유서 붙임
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2장제9조를 제19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출산육아수당) ① 도지사는 출산·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에 대하여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원 신청은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망·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출생아동의 사망·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,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육아수당의 지원 대상, 금액,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10조 앞에 “제3장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” 를 삭제한다.

제16조 앞에 “제4장 보칙” 을 삭제한다.

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,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, 제16조를 제10조로 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16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포럼 등 개최)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, 토론회,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14조(중전의 제11조)제1항 중 “20명” 을 “25명” 으로 하고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홍보·교육) 도지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, 저출산·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2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군,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6조(중전의 제13조)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

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보칙

제19조(중전의 제9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사업의 위탁)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
2. 제10조에 따른 포럼 등 개최 사업
3. 제11조에 따른 홍보·교육 사업

제20조(중전의 제17조) 중 “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육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출산육아수당의 지원에 관한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인구정책사업)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인구교육사업</u></p> <p>2. ~ 6. (생 략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·군, 관련기관, 법인·단체, 개인 등에 보조금 등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, 제2항의 보조금의 지원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	<p>제8조(인구정책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.</p> <p><삭 제></p> <p>1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
<p><신 설></p>	<p>제9조(출산육아수당) ① <u>도지사는 출산·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에 대하여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원 신청은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 또는 모가 하여</u></p>

	<p>야 한다. 다만, 사망·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출생아동의 사망·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,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육아수당의 지원 대상, 금액,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4장 보칙</p>
<p>제9조(사업의 위탁) 도지사는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(사업의 위탁)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. 제10조에 따른 포럼 등 개최 사업 3. 제11조에 따른 홍보·교육 사업
<p>제3장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</p>	<p><삭 제></p>
<p><신 설></p>	<p>제3장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</p>
<p>제10조 (생 략)</p>	<p>제13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제11조(홍보·교육) 도지사는 인구</p>

	<p>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, 저출산·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12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군,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
<p>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1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- ----- ---- 25명 ----- -.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 (생략)</p>	<p>제15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</p>
<p>제13조(위원의 해촉)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제16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 (생략)</p>	<p>제17조 (현행 제14조와 같음)</p>
<p>제15조 (생략)</p>	<p>제18조 (현행 제15조와 같음)</p>
<p>제4장 보칙</p>	<p><삭 제></p>
<p>제16조(포럼 등 운영)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의 효율적 대응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</p>	<p>제10조(포럼 등 개최)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</p>

<p><u>위하여 포럼, 토론회, 간담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포럼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, 토론회,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17조(포상)</u> 도지사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기업·단체·기관 등에 대하여 「<u>충청북도 포상 조례</u>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</p>	<p><u>제20조(포상)</u> ----- ----- ----- 「<u>충청북도 포상조례</u>」----- -----.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7조(인구정책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인구교육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결혼·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0조(민간의 참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4항제1호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유

- 본 개정안은 안 제9조에 출산·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이 요구되지만, 본 조항은 권고 형식의 임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, 또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, 금액,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- 이에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